

##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포, 의류, 축사도구, 세면도구, 주·부식류 등 생활필수품 구입
  3.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비(중앙 지원대상인 경우는 선지원 후 정산)
  4. 비축물자 및 보관창고 설치
  5.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의연금품 조작경비
- ② 구호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 및 구호에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관·실·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수급권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수급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보호비용”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수급자의 급여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포함된 가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급여의 종류) ① 이 조례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특별생계보조급여
- 월동대책보조급여
- 교육급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특별생계보조급여)** 특별생계보조급여는 의복, 음식물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품을 보조하는 것으로 매 분기별 지급한다.

**제6조(월동대책보조급여)** 월동대책보조급여는 월동기에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연료비와 김장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11월에 지급한다.

**제7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수업료(입학금 포함),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교육급여 중 수업료는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 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은 매년 3월에 지급한다.

**제8조(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제8조의 신청자에 대한 급여 실시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결정한 후 문서로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10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상자

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85 호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 세대를 말한다.
3. “65세 이상 노인 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이 포함된 세대를 말한다.
4. “등록장애인 세대”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5. “한부모가족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6. “국가유공자 세대”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기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소년소녀가장세대

제4조(보험료 신청) 공단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 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 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제8조(보험료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공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공단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자 명단

( 읍 · 면 · 동 )

(단위 : 원)

[별지 제2호 서식]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리대장

( 韓 · 면 · 동 )

(단위 : 원)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여 국가 및 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다자녀 가족”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 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② “가족친화”라 함은 자녀를 출산·양육·교육 하는데 도움을 주고, 여성의 출산 및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부당한 처우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 “아이사랑카드”라 함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 대책의 추진 방향
2. 주요 과제 및 그 과제의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제5조(출산친화사업 지원)**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출산·양육·보육 관련 사업
2. 다자녀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3. 출산장려 사업 시민단체의 지원
4.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사업 지원

**제6조(출산장려금 지급)** 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축하금 또는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 출산축하금 30만원
  2. 둘째 자녀 : 자녀양육비 120만원(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
  3. 셋째이상 자녀 또는 5세 이하 입양아 : 자녀양육비 240만원(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 ② 출산장려금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 현재 부모의 주민등록이 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이 되며 부모에게 지급한다.
- ③ 제2항의 부모 또는 친권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미혼 부모
  2.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 등의 친권자
  3. 부모 및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입양아에 대한 자녀양육비는 지급 시기가 5세 이상인 경우에도 2년간 지급 한다.

**제7조(출산장려금 신청)** ①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후 6개월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출생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시 출산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자 현황을 매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출생신고 현황을 활용하여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출산장려금의 신청은 보건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에게 신청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 적정 여부를 부기하여 보건소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아이사랑카드 발급)** ①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기 위하여 아이사랑카

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력업체 이용시 할인

2.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료·이용료·수수료 등의 할인

② 아이사랑카드는 금융기관 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아이사랑카드는 다자녀 가족 가구주에게 1매씩 발급하며 자녀의 막내가 17세가 되는 연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④ 아이사랑카드 발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아이사랑카드 이용시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협력업체에게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할 경우 제휴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할인 및 그에 따른 할인 수수료 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기업·단체 등의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업 촉진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저출산의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정 중 모범가정

2. 아이사랑카드 이용 협력업체 중 모범업체

3. 가족친화 우수 기업체

4.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한해 적용한다. 단, 입양하는 예외로 한다.

제3조(자녀의 수 적용) 이 조례 중 자녀의 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4조(종전 출생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2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중 종전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 자치단체의 조례 등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퍼센트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노인복지 및 기금운용 관련 실·과장으로 임명하고, 시의원,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까지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 시지회 운영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지도 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

( 읍 · 면 · 동 )

(단위 : 원)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행복한 가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시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수강료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3. 사회복지전문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시 및 시교육청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장 공립어린이집

**제10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1조(명칭과 소재지)** 시장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12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어린이집을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계

시판, 시보,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적격성 및 공신력,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위·수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하며, 위탁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2. 어린이집 및 수입금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위·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파손 또는 멸실된 반환대상물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것 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위탁어린이집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6. 위탁어린이집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이 조례 또는 위·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정신·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4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수탁자는 그 임면사항을 해당 교직원 임면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탁어린이집과 그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제4장 보육정보센터

-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시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업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0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21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영유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8. 기타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

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장 비용의 보조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재 및 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위탁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25조(준용)** 보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국가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

명칭(어린이집명)	소재지	인가일
죽림어린이집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은행나무길 1번지	1982. 4.21
연기어린이집	세종특별자치시 남면 당산로 122-3번지	1993.12.31
신흥푸르지오어린이집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도원 1로 16	2007.10.15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시장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사업시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

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사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시설 및 운영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5. 기타 시장이 아동보호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사업비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 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자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
4. 지역아동센터의 장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6. 시교육청 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7.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8. 업무담당 과장(당연직 위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사업비 지원 대상센터 선정 및 운영비 차등 지원을 위한 선정
4. 센터 운영사업 평가
5. 그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연 2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및 시설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 관리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의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사회교육
2.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취업교육
3.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양교육
4.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행정시책 홍보
5.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
6. 여성의 신상 상담 및 취업알선
7. 그 밖에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

**제3조(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 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대상자는 공고에 의거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위탁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대상자로 선정 되었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시는 취소할 수 있다
- ④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수강료)** 회관을 사용·교육을 수강 하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제5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여성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3.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교육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때 : 전액반환

3. 시설사용 또는 교육개시일 전까지 사용·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

4. 교육개시 후 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해당 월분을 제외한 남은 개월의 수강료 반환

**제8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사용자 및 교육 수강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 를 양도하거나 전매하거나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용제한 및 수강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수강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단체
3. 회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
4.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5.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 불응하는 자 또는 단체

**제11조(사용자 등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 및 수강자는 시설 또는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 태만으로 시설 등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위촉)** ① 시장은 기술 및 취미교육 등을 위하여 강사(전문 강사포함)를 위촉·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독서실

**제13조(이용 및 회원가입)** ①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독서실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만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서 독서나 임용, 자격시험 준비 등을 위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시민(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회원에 가입하려는 자는 이용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④ 독서실의 회원가입신청이 수용한계를 넘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원증 교부 및 회원 관리)** ①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시민에게 형 평성을 고려하여 이용기간을 설정한다. 회원의 독서실 이용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기간이 만료된 회원은 다시 연장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정하여 이용하게 한다.

② 시장은 회원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접수 및 회원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15조(회원가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 가입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이용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독서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이용료)** 독서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7조(이용 및 손해배상)** ① 독서실의 운용시간은 09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배주 월요일은 개설을 하지 아니한다.

- ② 이용자는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③ 이용자는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독서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3조제3항 관련)

## 여성회관 독서실 회원 가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집 핸드폰
이 용 목 적	<input type="checkbox"/> 임용시험준비 :	임용시험	
	<input type="checkbox"/> 자격시험준비 :	자격시험	
	<input type="checkbox"/> 전문분야 공부 :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이 용 기 간	<input type="checkbox"/> 기 간 : 20 . . . ~ 20 . . .		
	※ 주로 이용하는 시간 :      요일 (오전, 오후, 야간)		
비 고	* 독서실 운영에 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별지 제2호 서식] (제13조제3항 관련)

회원증

제 호

이용기간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 사람은 여성회관독서실 회원임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별지 제3호 서식] (제14조제2항 관련)

여성회관 독서실 회원신청서 접수 및 관리대장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 설치)**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 위탁 등의 사유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기능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주민교육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3. 건강가정업무 수행계획 수립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5.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중 사회적 수요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센터로 하여금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결혼이민자가족지원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외에 상근하여야 할 센터종사자는 4명으로 하되, 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기능수행에 적합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에 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센터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장비·비품 그 밖에 시의 소유로 하는 물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부나 관련 서류를 비롯한 센터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은하수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라 함은 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2. “준관내”라 함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전 지역을 말한다.
3. “관외”라 함은 1호 및 2호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4. “자연장지”라 함은 은하수공원에 설치·운영되는 잔디장, 수목장·화초장을 말한다.
5. “가족장지”라 함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6. “사용료 등”이라 함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말한다.
7. “연고자” 라 함은 은하수공원 내 시설이용 계약서 최초로 신청 등록 된 자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신고 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은하수공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연남면 고정리 ○○ 번지 일원에 둔다.

② 은하수공원 내 장사시설의 종류 및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시설)** 시장은 은하수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
2.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자격)** ① 장례식장, 화장장 및 봉안당은 이용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골분을 자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관내 및 준관내에 주소를 둔 자.
  2. 관내소재 분묘의 개장유골.
  3. 관외거주 사망자의 유골(개장유골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 당시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 ③ 관내에 소재하는 종종묘는 5대 이상으로서 10기 이상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고 등)** ① 은하수공원 내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고자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③ 연고자는 유골의 안치 및 반환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사망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새로운 연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한다.

**제7조(이용권의 양도 등 제한)** 은하수공원시설의 이용권은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공원시설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은하수공원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공원시설 사용료 등을 관내, 준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은하수공원 내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화장장 및 봉안당의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로서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그 외의 국가유공자는 50%를 감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 수급자
3.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무의탁 수용자
4. 행여 사망자 등 무연고자(관내에서 발생된 자에 한한다)
5. 기타 시장이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봉안당의 이용 등)** ① 봉안당의 이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골분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② 부부단은 연장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안치되는 시점까지 추가로 연장계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기간은 합장한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 ③ 연고자는 봉안당에 봉안된 골분의 반환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봉안당내 골분의 연고자는 안치된 골분을 1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은 무연고로 간주하여 5년간 무연고실에 안치 후 임의 산골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자연장지의 이용 등)** ① 자연장지의 이용기간은 잔디장지 및 종종장지의 경우는 30년, 수목장은 15년으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추가 연장 계약할 수 있다.

1.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 : 30년(계약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안장된 골분을 기준)
  2. 수목장지 : 15년. 다만, 수목장지 중 가족목의 경우는 15년 추가(계약 기간 만료 전 마지막으로 안장된 골분을 기준)
  3. 제5조제3항에 따른 종중자연장지 : 15년
  4. 1호 가족장지 및 2호 가족목의 경우 연장기간내 안장자가 발생하지 않을 시 나중에 안장자가 발생되는 시점까지 추가 연장 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기간은 안장일로부터 15년으로 한다.
- ③ 자연장지에 안장하는 골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연장의 방법)** 골분은 흙과 섞어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서 묻을 수 있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읍하수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법인 또는 지역주민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읍하수공원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비용 등을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을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온하수공원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온하수공원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은하수공원 내 장사시설의 종류 및 명칭

구분	시설명	규모	주요 용도 등
장례문화센터	장례식장	4,368m <sup>2</sup> (지하1층 지상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객실 및 빈소 : 각 10개소</li> <li>○ 부대시설 : 영결식장 2개소(옥내/옥외), 염습실, 안치실, 장례용품점, 매점, 사무실</li> </ul>
	화장장 (해님의 집)	7,926m <sup>2</sup> (지하1층 지상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로 : 10기</li> <li>○ 부대시설 : 고별실 4개소, 분골실 2개소, 수골실 2개소, 유족대기실 10개소, 휴게홀, 매점</li> </ul>
	봉안당 (달님의 집)	3,293m <sup>2</sup> (지하1층 지상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치단 : 21,442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내 : 20,034</li> <li>- 옥외 : 1,408</li> </ul> </li> <li>○ 부대시설 : 제례실(4개소), 사이비봉안실, 현화대, 휴게실</li> </ul>
	관리(홍보관)	1,597m <sup>2</sup> (지상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관, 관리사무실, 식당(150석)</li> </ul>
	유택동산	109m <sup>2</sup> (지상1층)	
자연장지	잔디장	60,442m <sup>2</sup>	
	수목장	12,469m <sup>2</sup>	
	화초장	2,870m <sup>2</sup>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2개소, 종종행사장, 비석공원, 연못, 휴게공간(상징 조형물)</li> </ul>

[별표 2]

은하수공원시설 이용료

&lt;단위 : 원&gt;

구분	내 용	이용 금액		
		관내	준관내	관외
장례식장	○ 영결식장 1실당(1회~1시간)		30,000	
	○ 빈소 1실당(1시간) - 일반실		9,000	
	- 특실		17,000	
	○ 안치실 1구당(1시간)		2,000	
	○ 염습실(1회)		50,000	
화장장	○ 대인(만15세 이상)	160,000	320,000	480,000
	○ 소인(만14세 이하)	130,000	260,000	390,000
	○ 사산아	50,000	100,000	150,000
	○ 개장유골	60,000	130,000	190,000
봉안당 · 봉안담	사용료	○ 개인단 1위당(15년)	270,000	810,000
		○ 부부단	410,000	1,230,000
		○ 행복도시건설 관련 개장유골(1위, 15년) - 개인단	190,000	-
		- 부부단	280,000	-
관리료	○ 개인단	110,000	330,000	
	○ 부부단	160,000	480,000	
자연장지	사용료	○ 잔디장지 - 개인장지 1기당(30년)	510,000	765,000
		- 합장으로 추가되는 1위	260,000	390,000
		- 가족장지(30년) - 4위용	2,040,000	3,060,000
		- 6위용	3,060,000	4,590,000
		- 8위용	4,080,000	6,120,000
		- 종종장지 1위당(30년)	360,000	540,000
		- 합장으로 추가되는 1위	180,000	270,000
		- 연장(1기당, 15년)	270,000	405,000
		- 행복도시건설 관련 개장유골(30년)	360,000	540,000
		○ 수목장지( 15년) - 가족목(4위 기준, 1그루당)	240,000	360,000
관리료		- 공동목(1위당, 1회<15년>한 연장 가능)	60,000	90,000
관리비	○ 관리비 - 잔디장지 1기당(30년, 개인, 가족, 종종) * 연장기간 관리비(종종)	140,000	210,000	
	- 수목장지(가족, 15년)	900,000	1,350,000	
	- 수목장지(추가되는 1위, 15년)	230,000	345,000	

##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 통원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3조(이용자의 범위)**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저소득노인(등급외자)
2. 장기요양 등급자 중 방문요양·목욕, 주야간·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치 않고 있는 저소득노인
3.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소득기준 적용제외)
4. 그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저소득노인(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을 말한다.)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여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제4조(운영인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종사자를 둘 수 있다.

- ② 시설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의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3년이상 노인복지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2. 제3조의 이용대상자를 30인 이상 확보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① 수탁기관의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및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의 장이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중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 법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 보건소장
- 시 소방본부장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
2. 지역응급의료계획의 변경
3. 지역응급의료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한 때
3. 품위를 유지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혼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항결핵제의 처방별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행형법」에 따른 수용자
5. 재소자, 노숙자, 외국인 등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구 분	기 준	금 액
초·재치료처방	1인1개월분	2,000원

##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

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기관)**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골밀도검사 및 치과진료와 유료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 등)** ①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증명 발급에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ガ를 가산하되, 제증명 발급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기준과 검사항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
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이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
6. 시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1,2급) 진료
7. 보훈 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나.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마.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 사.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8.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의 진료
9.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주민의 진료
10. 이동목욕 자원봉사자의 진료

제6조(납부) 진료비와 제증명발급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추정) 거짓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치과진료 및 유료예방접종 등 기타 수가

구 분	기 준	금 액
치면세마(스켈링)	1회당	10,000원
유료 예방접종	"	백신구입원가(주사기 등 소모품비용 추가)
콜밀도검사	"	10,000원

(별표 2)

### 제증명발급 수수료 요율표

구 分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및 일반건강진단서	1통	500	
2. 채용신체검사서	"	500	
3. 일반진단서	"	500	
4. 특별진단서	"	2,000	요양신청용, 병사용
5. 사체검안서	"	2,000	
6. 성별 및 연령 감정서	"	2,000	
7.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	1,500	건강진단규칙 제8조 에 규정한 수수료
8. 사망진단서	"	500	
9. 출생·사산·사태 증명서	"	500	
10. 총포, 종기, 운전면허신체(적성)검사서	"	500	
11. 기타 증명 및 가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	300	
12. 1통추가발급	"	100	

(별표 3)

## 제증명발급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

### 1. 제증명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 가. 증명발급에 따른 별도의 검사를 요하는 경우의 검사료는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진찰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再診療)로 산정하고, 검사료는 항목별로 산정합산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하여 실시한다.
- 나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건강보험 1회 방문당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다만, 본인의 요구에 의해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진료 수가기준액표 중 검사료 산정 지침에 의한다.
- 다.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 라. 기본진료만으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 총포·충기·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서의 진찰료는 의원급 진찰료중 재진료 금액을 징수한다.
- 마.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건강진단결과서)등 관계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 2. 검사항목 및 수가 적용

구분	검사항목	검사구분	비고(수가 적용)
채용신체검사서	0 기왕력, 작업경력, 자각증상, 타각증상, 혈압, 체중, 시력, 청력, 신장, 색신 0 혈액형 0 뇨검사(뇨단백,뇨당) 0 빈혈 0 혈청 SGOT 0 혈청 SGPT 0 胸부X-선 촬영	기본진료 (진찰) 검사 " " " " " " 방사선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 행위급여 및 비급여 수가에 적용한다.</li> <li>100원미만은 절사 한다</li> </ul>
건강진단서	0 간염항원 및 항체검사 0 胸부 X-선 촬영	기본진료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보험 행위급여 및 비급여 수가에 적용한다.</li> <li>100원미만은 절사 한다</li> </ul>
일반진단서	0 관계법령에 의함	기본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 금액반을 징수한다</li> <li>100원미만은 절사 한다</li> </ul>

## 세종특별자치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근로자·사용자·공익·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가 구성된 업체의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의 범위안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사정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성실히 행의무)** ①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비자” 및 “사업자”的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은 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실현)** 시장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기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4조(건전소비운동 실천)**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절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기타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 제2장 소비자 권리의 보장

### 제1절 통 칙

- 제5조(소비자관련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 ② 시장은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관계기관·단체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2절 위해 및 불공정거래 방지

- 제6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불공정거래의 행정지도)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시장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

뢰하여야 한다.

**제8조(계량의 적정화)** 시장은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절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제9조(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

1. 시 : 소관업무 담당부서
2. 읍·면·동 : 민원실

**제10조(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기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1조(운영)** 소비자보호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12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

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면·동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시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제15조(시험·검사 등)** ① 피해구제의 신청 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면·동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소비자보호원

2. 시 농업기술센터

3.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4. 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련 기관

5. 기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

④ 제13조제1항의 통보서에서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 제4절 소비자단체의 지원

**제1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내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향상과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2. 기타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임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 지방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조(실무위원회) 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제18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무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25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1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장 보 칙

**제26조(의견청취·검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 위원(실무위원 포함)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지도·단속)**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은 시 단위 또는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단속반원은 소관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며, 필요시 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단속 실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도·단속결과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권고·공표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공표)** ① 시장은 소비자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

에게 의견을 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자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란 응자취급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이자차액을 시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차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배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응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2.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기업회생 지원자금
  3.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
  4. 창업보육 지원자금
  5. 소상공인 지원자금
  6. 시장재개발사업 및 유통시설개선 지원자금
  7.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시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5. 시장재개발사업자
6. 체인사업자 직·가맹점
7. 상점가진흥조합·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시장상인회 회원
9. 소상공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우대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거치도록 한다.

1. 부지매입비, 유휴공장매입비 또는 공장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신청하는 경우
  2. 자금신청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융자금액, 융자기간, 융자금리 등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나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금융기관의 협조융자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기금지원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12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나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세종지역본부 임원
2. 중소기업중앙회 세종지역본부 임원
3. 상공회의소 세종지역본부 임원
4. 시의회 의원
5. 관내 소재 금융기관 임직원
6. 중소기업경영관련 전문가
7. 기금업무 담당 국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

하고, 그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한다.

- 제2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나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현지 실사나 경영·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연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 [별표 1] 중소기업육성자금별 지원기준

### □ 공통사항

#### 1. 지원대상업종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li><li>○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중 제조업</li><li>○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li><li>○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의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에 한함)<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반 계약에 의한 공장 매매자금은 제외</li></ul></li></ul>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li></ul>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인 미만</li><li>-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 5인 미만</li></ul></li></ul>

#### 2. 지역제한

-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종시 관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있는 중소기업체에 해당되어야 함

## □ 자금별 지원 조건

### 1. 창업지원자금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지원기준

구 분	시설투자 자금	운 전 자 금
융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건축 소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후공장 매입[법원, 한국자산판리공사, 금융기관의 공매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하는 경락대출에 대해서는 당해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li> </ul> </li> <li>○ 공장의 증 개축 소요자금</li> <li>○ 제품생산 시설의 신규 구매 또는 개체의 소요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투자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li> </ul> <p>※ 사업개시 3년 이하인 창업기업에만 해당</p>
융자금액	○ 1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융자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융자금리	○ 시장이 정한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금리)	
대출유효기간	○ 추천통보 일부터 6개월	
한도금액 예 외	○ 개별기업이 조합 단체 또는 공동사업(협동화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지원받은 자금(한도액 계산 시 불 포함)	

-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등은 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동일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구조고도화 지원자금, 창업지원자금, 산업기반자금 등)을 포함한 총지원액이 50억원을 초과하지 못함(융자추천일 현재 대출금 합계기준)

## 2.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

구 분	경 영 자 금
융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에 소재하는 제1호의 지원대상 업종으로서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 3년 이상을 초과하고, 최근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li> </ul> </li> </ul> <p>※ 지원한도액을 이용한 기업이 융자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한 금액만큼 일정기간 동안 융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p>
융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은 3억원 이하</li> <li>○ 수출기업(연간 100만불 이상) · 선도기업 · 녹색기술인증기업은 5억원 이하</li> </ul> <p>※ 융자금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고, 시장경기상황에 따라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특별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p>
융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이내(일시상환)</li> <li>○ 3년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li> </ul>
융자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자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융자금리로 하되, 시장은 융자금리 중 3% 이내의 금리를 예산범위 내에서 융자기업에게 이자보전을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특별자치시 선도 · 유망지정기업, 정부의 녹색기술인증기업 : 이자보전 1% 추가지원(단, 2회에 한함)</li> <li>-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연대회 우수분임조 이상의수상기업 또는 전국품질경연대회 수상분임조 기업 : 이자보전 1% 추가지원(단, 1회에 한함)</li> <li>-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 : 이자보전 1% 추가지원</li> </ul> </li> </ul>
대출유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통보 일부터 3개월</li> </ul>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등은 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기업회생지원자금 지원기준

구 분	경 영 자 금
융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이상 피해기업</li> <li>○ 대전·충남,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li> </ul>
융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억원 이하</li> </ul>
융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li> </ul>
융자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 정한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금리)</li> </ul>
대출유효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통보 일부터 2개월</li> <li>※ 대출절차가 진행 중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 기간까지 연장 가능</li> </ul>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등 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4. 혁신형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기준

구 분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비, 용용 S/W 구입비</li> <li>○ 공장 신규건축 및 증·개축 소요자금</li> <li>○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li> <li>○ 기타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비</li> </ul>
융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억원 이하</li> <li>※ 동일업체에 1회 한함. 다만, 융자추천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가능</li> </ul>
융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li> </ul>
융자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 정한 융자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금리)</li> </ul>
대출유효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통보 일부터 3개월</li> <li>※ 대출절차가 진행 중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 기간까지 연장 가능</li> </ul>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등 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5. 창업보육지원자금 지원기준

구 분	시설 및 운전자금
용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로서 연간 제품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를 출입하고 1년 이내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 신규 또는 중·개축 소요자금</li> <li>- 생산에 필요한 제조설비 또는 시험·연구개발 장비 구입비</li> <li>- 기타 원·부자재 구입비,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li> </ul> </li> </ul> <p>※ 동일 업체당 1회에 한함</p>
용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자금은 2억원 이하</li> <li>○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하</li> </ul>
용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li> </ul>
용자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 정한 용자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금리)</li> </ul>
대출유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통보 일부터 3개월</li> </ul> <p>※ 대출절차가 진행 중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 기간까지 연장 가능</p>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등은 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소상공인지원자금 지원기준

구 분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용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또는 충청권 소재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정의 창업교육 또는 창업(경영) 컨설팅을 이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시 6개월 이내로서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li> <li>- 사업개시 6개월을 초과하여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li> </ul> </li> </ul> <p>※ 동일 기업에 1회에 한하고, 정부의 소상공인지금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p>
용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금은 3천만원 이하</li> <li>○ 경영개선자금은 5천만원 이하</li> </ul>
용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li> </ul>
용자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 정한 용자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금리)</li> </ul>
대출유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 통보일부터 3개월</li> </ul>

※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등은 시장이 정한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시장재개발사업 지원자금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시장을 재개발·건축·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선정 시장을 우선 지원
- \* 무등록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나. 지원조건

종 류	재개발·재건축사업 자금	임시시장 설치자금
융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 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시설 : 주차장, 소비자편의시설, 통로, 화장실 등</li> <li>- 설비비 : 전기·기계설비, 상하수도시설, 냉난방시설 등</li> <li>- 필요경비 : 건물철거비용, 이주비 등(총 사업비 50% 이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기존 건물의 임차비</li> </ul>
융자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억원 이하</li> </ul>
융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li> </ul>
융자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동금리</li> </ul>	
대출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통보 일부터 2년</li> <li>* 다만, 건축공정상 시장이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정기간 조정 가능 하지만, 융자추천을 받은 후 건축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기간연장은 불가</li> </ul>	
한도금액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 가능</li> </ul>	

## 8. 유통시설개선 지원자금 지원기준

### 가. 지원대상

○ 유통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 소매업 및 상품 중개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에 의한 상점가 진흥조합

○ 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 나. 지원조건

구 분	지 원 조 건
용 자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규모점포의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시설개선 사업 등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를 이전 하는경우 포함)</li></ul>
용 자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요자금의 75% 범위 내에서 1억원 이내</li></ul>
용 자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li></ul>
용 자 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변동금리</li></ul>
대출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추천통보일부터 6개월</li></ul>
한도금액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 가능</li></ul>

## 9.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지원기준

### 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이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조직화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화산업 관련조합, 단체 또는 법인

### 나. 지원조건

구 분	용 자 조 건
융자금리	○ 정부의 재정자금 융자금리 따라 변동금리 적용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3년 이내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매입비 또는 임차 보증금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의 75%이내 ※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는 법원,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경락 받은 경우와 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당사자간 거래에 의한 매입은 제외함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8억원 이내(단, 특별지원지역 일부지역은 2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

### 다.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 원 내 용
융자	○ 기업 및 조합이 아닌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 종업원 등에 대한 대출
지출	○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비로서 집행

※ 사업비 규모 : 당해 연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비 자체 조성액의 20%이내

※ 사업계획 및 확정

- 시장이 연초 또는 지원사업 필요시에 사업비 규모(한도)를 감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청의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
- 연초 자금지원계획 수립이후 협의 요청 시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전반에 사업계획 수정안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비 조성 및 부담 : 지역특화사업비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비 조성액으로 지원